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활용방안

남진열(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I. 서론

청소년비행은 그 원인과 특성에 있어서 성인범죄와는 상이한 점이 많으며, 주변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는 청소년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완성되지 않았으며,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유의사보다는 비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환경적 영향이 더 중요한 비행성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윤호, 1993: 194).

과거에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있어서 의료적·정신의학적 개념에 근거한 재활모델이 주류를 이룬 반면, 오늘날에는 범죄를 보는 시각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지역사회라는 개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통합모델의 교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활모델의 일차적인 목표가 범죄자 개인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두어진다면, 통합모델은 범죄자와 지역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범죄성에 두어진다. 즉, 범죄자들의 지역사회내로의 통합은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생활에의 접근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 속에서 교정의 역할은 범죄자와 지역사회간의 손상된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근식, 1996, pp.383-384).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은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 되었고, 성인법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25일의 사회보호법 개정으로 보호감호 기출소자에 한정적으로 시행하

다가 1997년 1월부터 확대실시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실시이후 1996년까지 총 141,760명을 보호관찰하였으며, 대상자 추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청소년백서, 1997: 577).

1995년을 기준으로 소년범죄자의 재범율이 23.4%인데 반해, 보호관찰대상자는 10.1%의 재범율을 나타내고,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도 수강명령을 집행한 대상자는 2.9%,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 대상자는 2.8%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 보호관찰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범죄백서, 1996: 300, 보호관찰현황, 1996: 48, 65, 75).

이것은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보호관찰직원의 전문성 미비, 지역사회연계 및 민간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율이 낮은 것은 보호관찰의 대상자의 범죄가 경미하거나 개선이 비교적 쉬운 우발적인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이 확대실시됨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윤호(1993: 208)는 청소년비행자의 교정교화는 이제 더 이상 소년사법당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개입의 주체가 보다 사적이고 민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적 개입은 낙인을 양산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개입주체의 변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¹⁾이 소수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소와의 역할관계, 조직구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보호관찰의 실시에서 지역사회 개입 즉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및 사회재통합의 달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으로의 확대 활용방안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복지의 관련성, 지역사회복지관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보호관찰과 사회복지의 관련성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크게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

1)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복지관은 서울의 면목사회복지관, 신당사회복지관, 이대사회복지관, 태화은평사회복지관, 태화장안사회복지관, 중대사회복지관 등이 있으며, 수원의 우만사회복지관, 무봉사회복지관, 성남사회복지관 등이 있고, 대구의 청소년복지관, 부산의 해운대사회복지관, 남산정복지관, 광주의 무진사회복지관, 청주의 청주사회복지관, 하곡동복지관 등이 있다(김형방, 1996: 98, 보호관찰현황, 1996: 127).

최소년은 경찰의 검거에서부터 검찰로의 송치, 그리고 형사법원에서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가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한 송치 및 통고 그리고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의한 통고 등으로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이송되어 소년부판사의 심리결과 2호, 3호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을 받은 자가 보호관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소년교도소로부터 가석방된 자(형법 제73조의 2)와 소년원으로부터 가퇴원된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5조)도 보호관찰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2호, 3호 처분시 16세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그리고 형법 제62조의2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역할은 첫째,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둘째, 간생보호의 실시, 셋째,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넷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마지막으로 범죄예방활동 등이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역할에서 스트롱(Strong, A.)은 발견자(detection), 중개자(broker), 응호자(advocate), 평가자(evaluator), 동원자(mobilizer), 가능케 하는자(enabler), 정보관리자(information manager), 조정자(mediator), 교육자(educator), 지역사회계획가(community planner), 시행자(enforcer) 등 11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알렌 등(Allen, H., A. Carlson, & E. Parks)은 보호관찰관을 4가지의 유형과 보호관찰소를 3가지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즉 보호관찰관은 형벌 및 법 집행 보호관찰관(punitive/law enforcement officer), 복지 및 치료 보호관찰관(welfare/therapeutic), 보호 및 종합 보호관찰관(protective/synthetic) 그리고 수동 및 시간근무 보호관찰관(passive/time server)으로 구분하고, 보호관찰소는 통제모델(control model), 사회적 서비스모델(social service model) 그리고 통합모델(combined model)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보호관찰소는 통합모델과 사회적 서비스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통제모델은 전자장치 감시(electronic monitoring), 집중감독(intensive supervision), 지역사회통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형벌 및 법 집행 보호관찰관은 통제모델 기관에서 찾기 쉬우며, 복지 및 치료 보호관찰관은 사회적 서비스모델 기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통합모델기관에서의 보호관찰관은 사회적 서비스 역할과 통제, 지역사회보호 역할을 통합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Abadinsky, 1994: 332-333).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주요 기능은 조사기능, 분류기능, 그리고 지도감독기능으로 구분되어 설

명되고 있다²⁾

보호관찰의 주요 실천활동으로는, 첫째,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의뢰시 조사결과를 법원에 통보해 주는 판결전조사(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 둘째,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교정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의의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개개인의 범죄원인 및 개선, 제거해 주어야 할 범죄 유발 요인을 조사하는 환경조사(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6조), 셋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석방후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전에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범죄 또는 비행의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환경개선활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7조), 넷째,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도 및 감독(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3조), 다섯째,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초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4조), 여섯번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응급구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5조), 일곱번째,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에게 시설내처우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통하여 근로의식과 봉사정신을 고취시키는 사회봉사명령, 마지막으로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대상자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동안 정신교육이나 준법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수강명령 등이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성규탁·정영순·배임호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서비스 전달 기능을 들고, Kahn & Kamerman의 정의를 인용하여 서비스접근성 증대, 생활지원, 특수집단 보호, 사회적기능 회복, 공동생활능력 함양,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조정과 통합으로 설명하고, 황성철은 서비스 대상자의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적 접근,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운영을 통해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정신, 치료와 재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문제예방 기능, 그리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복지사업 및 프

2) 보호관찰관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방(1996: 108-152)을 참고.

로그램의 전개로 설명하고 있다(한명섭, 1997: 41-42).

그리고 죄일섭은 딜릭(Sidney Dillick)의 사회복지관 기능에 대한 견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참여시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돋는 보다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복지관은 Casework이나 Groupwork을 활용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지역내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지역사회조직의 과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죄일섭, 1996: 13).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³⁾에 대해서 셰퍼 등(Sheafor et al., 1997: 57-69)은 중개자(broker), 옹호자(Advocate), 교사(Teacher), 상담가(Counselor) 및 임상가(Clinician),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업무량관리자(Workload manager), 직원개발자(Staff developer), 행정가/Administrator), 사회변화대행자(Social change agent), 그리고 전문가(Professional)의 역할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자스트로(Zastrow, 1992: 14-20)는 가능하게 하는자(enabler), 중개자(broker), 옹호자(advocate), 활동가(activist), 프로그램개발자(program developer), 감독자(supervisor), 조정자(coordinator), 그리고 고문(consultant)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보호관찰과 사회복지의 관계에서 관련성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기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최윤진, 1993: 233).

대상자의 측면에서 보면, 보호관찰대상자는 비자발적 특성이 강하며, 사회복지대상자는 자발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약간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복지의 목적에 있어서,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재적응 그리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는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호관찰의 목적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목적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분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연대 및 사회통합으로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도, 중개자(broker), 옹호자(advocate), 평가자(evaluator), 가능케 하는자(enabler), 정보관리자(information manager), 조정자(mediator), 교육자(educator), 지역사회계획가(community planner), 시행자(enforcer) 등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3)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eafor et al.(1997: 57-69)를 참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다소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역할의 분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접수심사, 사전판결서비스, 정신적·심리사회적 사정, 법원조사, 법적 증언, 보호관찰감독,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보호관찰의 기능이 흔히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Dinitto, M. D., & McNeece C. A., 1997: 238),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효과적인 사회사업의 전개은 실행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 피해자,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필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다(Raynor, P., Smith, D., & Vantone, M., 1994: 18).

III. 보호관찰의 실시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필요성

청소년범죄자 개인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인 조사(study), 조사에 기초한 의미있는 목표지향적 설명인 진단(Diagnosis), 그리고 진단된 문제의 확인 및 해결방법의 실행인 치료(treatment)단계에서 사회사업방법인 개별사회사업을 지역사회복지관의 영역에서 활용하여 개인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에서 보호자나 가족의 역할이 비행성교정 및 재범방지에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자녀교육법, 자녀와의 대화양식,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가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복지와 청소년복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처우를 위한 조직과 인력면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관찰소의 5급이상 보호관찰관은 79명으로서 보호관찰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관장과 사무 및 조사직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은 최대 68명으로서,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수(1996년 9월 현재 9,369명)는 약 361명⁴⁾으로 너무 과다하게 대상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보호관찰관이 다른 모든 업무를 맡지 않고 보호관찰활동에만 전담하고, 대상을 한달에 1번만 상담한다고 보아도 하루 평균 12명 이상의 보호관찰대상을 면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4) 외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의 적정사례수 설정현황은, 서독 40명, 오스트리아 30명, 미국 35명으로 설정하고 있다(최인섭·진수명, 1997: 141).

보호관찰활동을 보호선도위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 여건 하에서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와의 접촉은 지극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대상자의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토록 보호관찰관의 과다한 업무부담은 보호관찰활동의 형식적 운용 및 지체를 가져오므로 보호관찰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최인섭·진수명, 1997: 142-145). 위에서 보호관찰의 목적이 사회복지의 목적과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분담하여 청소년대상자 중심의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의 재적응과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보호관찰의 실시에서 거리적, 시간적으로의 접근성과 그리고 재활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회자원의 활용성의 측면에서도 보호관찰소보다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보호관찰소의 조직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보다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받기 위해 보호관찰소를 가는데 있어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어, 접근성에 있어 지역사회복지관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시켰던 환경 그대로 되돌려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환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의 협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자원을 지역사회복지관이 이용 및 연계 그리고 동원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범죄예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을 조정하고, 범죄예방의 노력이 서로 모순되는 정책에 의해 부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개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중 기관 접근방법(multi-agency approach)이 암시하는 것은 첫째, 경찰 및 보호관찰관의 활동만으로는 범죄예방활동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기회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셋째, 사회복지사와 다른 기관의 직원이 기관 상호간의 협력(inter-agency co-operation)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의 요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 상호간의 활동은 정보의 공유 및 비밀보장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입장은 다른 기관보다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mith, D., 1995: 104-107).

헨드슨(Henderson)은 보호관찰에 있어서 지역사회개입(community involvement)의 의미를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도우기 위해서 지역사회자원을 사용한다는 의미의 지역사회 아웃리치(community outreach), 자원봉사기관과 법적기관과의 기관 상호간의 활동을 수반하는 서비스 개발(service development), 그리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직접적 활동을 의미하는 지역사회사업(neighbourhood work)의 세가지 실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Raynor, P., Smith, D., & Vantone, M. 1994: 109)

IV.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보호관찰 실천방안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역할 및 권리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와의 기관 상호간의 협력 관계(inter-agency co-operation)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권한과 통제력을 가지고 재사회화, 재범방지, 그리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처분의 실시장소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의 활용이다. 법원은 소년이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59조제2항, 소년심판규칙 제34조제2항)하고 있지만, 규정을 활용하지 않고 거의 보호관찰소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김형방(1996: 99)은 집행과정에서 대상인원이 너무 많거나 극히 소수일 경우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정기적인 실시 및 대상자 개별화의 어려움을 수강명령에서, 봉사활동의 장소 및 종류의 부족, 사회적 인식부족, 처우의 불합리성, 단체활동에서의 범죄감염우려 등을 사회봉사명령에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예산의 부족, 인력의 부족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업과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개별사회사업, 사례관리, 집단사회사업과 같은 사회사업방법의 활용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경찰 - 검찰 - 법원 - 지역사회복지관의 절차단계상에 있어서의 협력적 연계방안 구축에 있어서 중심을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한다.

이러한 기관상호간의 협력(inter-agency co-operation)의 필요성은 최근 일반적으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히 범죄예방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직원과 전문가가 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역할과 관계에서 격려를 하는 것이다(Raynor, P., Smith, D., & Vantone, M., 1994:

125)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시기의 상실과 개입의 과다, 즉 비행사실이 경미하고 재비행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굳이 소년사법제도의 개입이 필요치 않은 경우까지 개입함으로써 필요없는 낙인과 범죄학습만 부추기고 처분이 가질 수 있는 통제력마저 상실시켜서 범죄억제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청소년비행자에 대한 교정교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윤호, 1993: 207).

이미 미국에서는 1924년초에 사회복지사가 비행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청소년들과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경찰당국에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다(Dinitto, M. D., & McNece C. A., 1997: 235).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리 절차상 비행청소년을 최초로 접촉하게 되는 경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경찰의 처리 및 선도과정에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검찰단계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검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단계에 있어서 판결전조사 및 환경조사 그리고 환경개선활동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Sheafor et al., 1997: 201)

학교교사 - 부모 및 보호자 - 청소년 - 사회복지사 - 심리학자 - 의사 등과의 지지적·정서적인 지지망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구성한다. 전문적인 사회사업실천에서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대상자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조 및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를 치료적, 예방적인 기능을 가지도록 지역사회의 지지망을 조직화함으로써 범죄청소년의 범죄치료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들의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활동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천이다.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대학 사회복지학과 실습생들에게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보호관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켜 장기적으로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장치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및 재범발생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청소년 자신의 개인문제에서 기인하지만, 비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한 사회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며, 현대의 교정이 범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개선이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소년교정의 궁극적인 이념과 목표는 사회재통합이어야 한다(이윤호, 1993: 206).

지금까지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처우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활용방안 즉, 보호관찰과 사회복지의 관련성, 보호관찰 실시에 있어서의 지역사회복지관의 필요성, 보호관찰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실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활용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보호관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복지의 목적이 범위상에 있어서 상이한 점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두 분야의 목적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처우에 필요한 다양한 기관과의 접근(multi-agency approach)과 기관상호간의 협력(inter-agency co-operation)을 통하여 사회연대 및 사회재통합을 달성한다는 것에서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처우에서 지역사회복지관 활용의 정당성은 구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들의 처우에서 사회사업방법의 적용에 찬성하지만, 보호관찰절차의 역할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분야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영역확대 등을 우려하여 갈등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집행종료자의 재범에 대한 실증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보호관찰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실시 결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식. 1996.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세사회복지연구.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김형방. 1996. “보호관찰관의 전문화를 위한 교정사회사업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1996. 보호관찰현황.
- 법무연수원. 1996. 범죄백서.
- 이윤호. 199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화”.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 서울: 서원. pp.186-210.
- 문화체육부. 1997. 청소년백서
- 최윤진. 1993. “교정사회사업”.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복지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230-253.
- 최인섭·진수명. 1997.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일섭. 1996.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편. 지역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인.
- 한명섭. 1997. “사회복지관의 실천과 과제”.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39-63.
- Abadinsky, H. 1994. *Probation and Parole: theory and practice*(5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Dinitto, M. D., & McNeece C. A. 1997. *Social Work: Issues and Opportunities in a Challenging Profession*(2nd). Boston: Allyn and Bacon.
- Raynor, P., Smith, D., & Vantone, M. 1994. *Effective Probation Practice*. London: Macmillan.
- Sheafor, Bradford W., Charles R. Horejsi, Gloria A. Horejsi. 1997.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4th). Boston: Allyn and Bacon.
- Smith, D. 1995. *Criminology for Social Work*. London: Macmillan.
- Zastrow, C. 1992. *The Practice of Social Work*(4th). Belmont, Calif.: Wadsworth.